

오산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 (한시법으로 폐지)

제정 2018년 10월 11일 조례 제1672호

폐지 2018년 11월 30일 조례 제1672호

오산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

제정 2018년 10월 11일 조례 제1672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